

# 기업지배구조 헌장

2023. 05. 02. 제정

## 전 문

OCI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는 글로벌 그린에너지 및 화학산업의 리더로서 최고의 기술과 제품으로 고객에게 신뢰받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. 이를 위하여 회사는 'OCI 기업지배구조 헌장'을 제정하여 주주, 고객, 구성원, 협력사,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선언한다.

## 제 1 장 주 주

### 제1조 (주주의 권리)

- ① 주주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주주권에 기반하여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.
- ② 주주는 관련 법규에 따라 주주총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고,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대한 질문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.
- ④ 회사는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최대한 많은 주주가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,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제공한다.
- ⑤ 회사는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공개하고, 이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존중한다.

### 제2조 (주주의 공평한 대우)

- ① 주주의 의결권은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, 의결권의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으로 적용한다.
-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한다.
- ③ 회사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위배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한다.
- ④ 회사는 전체 주주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에 적극

노력한다.

⑤ 회사는 거래 관계에 있어 주주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지 아니하며,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

### 제3조 (주주의 책임)

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,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한다.

② 지배주주 등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는 모든 주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다른 주주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
## 제 2 장 이 사 회

### 제4조 (이사회의 기능)

① 이사회는 관련 법규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
② 이사회는 제1항의 의결을 함에 있어 각 이사가 독립적으로 충실하게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.

③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며,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·관리·지원·감독한다.

④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승계규정을 마련하여 경영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.

### 제5조 (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)

① 이사 수는 효율적인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로 선임하며, 이사회 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한다.

② 이사회는 지배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위하여 사외이사를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구성한다.

③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었으며,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.

④ 이사회 구성원은 성별, 연령, 교육수준, 국적, 장애여부 등의 요소에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.

⑤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.

⑥ 회사는 이사 선임 시, 주주가 이사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할 시간을 가지고

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.

#### 제6조 (사외이사)

- ① 회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,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회사와 계약·거래 등 중대한 관계가 없고 회사경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적합하며,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후보로 추천한다.
- ②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,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심의안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한 후 참석한다.
- ③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직원 또는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#### 제7조 (이사회 운영)

-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,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.
- ② 이사회는 필요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들이 회의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.

#### 제8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회사는 이사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이사회 내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위원회,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, 경영위원회, 내부거래위원회, ESG위원회,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.
- ②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- ③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각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.

#### 제9조 (이사의 의무)

-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또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며,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는 어떤 심의나 의사결정이 자신의 개인적 이해에 직·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, 이사로서의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.
- ④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,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.

### 제10조 (이사의 책임)

- ① 이사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.
- ② 회사는 정관으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사외이사는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
- ③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한 후,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수행을 수행하였다면,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.
- ④ 회사는 이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대비하고,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통해 유능한 사람을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(D&O)에 가입할 수 있다.

### 제11조 (평가 및 보상)

- ① 이사의 경영활동 내용은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, 그 평가결과를 이사의 보수 및 재신임의 결정 등에 적정하게 반영한다.
- ② 이사의 보수는 그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하며, 회사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회사와 주주의 장기적 이익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.
- ③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외이사의 이사회 활동 내역과 보수 등을 공시한다.

## 제 3 장 감사기구

### 제12조 (감사위원회)

-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둔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,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·재무 전문가이어야 하며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.
- ③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진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,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감사,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,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변경의 타당성 검토,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

주주총회에서 사후보고 등을 수행한다.

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내부 감사부서의 지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### 제13조 (외부감사인)

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한다.

②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임하며, 외부 감사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한다.

③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성실히 답변하고 설명한다.

## 제 4 장 이해관계자

### 제14조 (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)

① 회사는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경제적·사회적인 가치를 나누고, 동반자로서 성장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한다.

③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어 공정한 시장질서를 준수하고, 상호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성실히 협력한다.

④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, 합병, 분할, 영업양수도,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한다.

⑤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 각각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.

### 제15조 (윤리경영)

① 회사는 '임직원 윤리 행동 준칙'을 제정하고 이를 구성원 모두에게 게시하고 교육한다.

② 회사는 '신뢰와 존중'을 경영의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, 모든 기업활동에서 법규와 사회규범을 준수하며, 이해관계자에 대한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노력한다.

## 제 5 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

### 제16조 (공시)

- ① 회사는 관련 법규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뿐만 아니라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,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시한다.
- ② 회사는 정기공시 이외의 중요한 경영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그 내용을 적시에 정확하게 공시한다.
- ③ 회사는 공시 내용을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노력한다.
- ④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,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부정보 전달체계를 갖춘다.
- ⑤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의 공개범위를 정하고, 특정 정보이용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한다.

### 제17조 (기업 경영권 변동사항)

- ① 회사의 인수, 합병, 분할,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적법하고 투명하게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한다.
- ② 회사의 경영권 방어 행위는 특정한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와 소액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아니된다.
- ③ 회사는 합병,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주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한 주주가 관련 법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.

## 부 칙

### 제1조 (다른 규정과의 관계)

기업지배구조헌장 규정과 정관 및 이사회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정관과 이사회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.

### 제2조 (시행일)

이 기업지배구조헌장은 2023년 5월 2일부터 제정·시행한다.